

의안 번호	86
----------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3. 02.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86호

다. 제출일자 : 2023. 02. 09.

라. 회부일자 : 2023. 02. 13.

2. 제안이유

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 및 방과후 “놀이”와 “쉽”을 통한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시립 거점형키움센터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나.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등지나뭇이 인사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수탁 협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다. 성북5호점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정 원	종사자	개소일	現)위탁기관
						협약기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5호점	아리랑로 19다길 12 (정릉2동)	194.22 ㎡	30명	3명 (센터장포함)	'21.9.1	사단법인 희망둥지나룻 2021.09.01~ 2026.08.31(5년)

나. 위탁기간 : 5년(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함.

다.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2023. 3월 예정)

라.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기관으로 가능

마. 위탁사업의 범위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성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2022.1월)

5. 검토의견

□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운영 수탁체인 사단법인 희망동지나 옷이 2022년 12월 30일 협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현황〉

소재지	시설현황(m²)	연간사업비 (2022년 기준)	위탁기간	운영주체	정원	운영 조직
성북구 아리랑로 19다길 12 (정릉2동)	전용공간 194.22m²	총 139,935천원 국비 : 17,862천원 시비 : 113,673천원 구비 : 8,400천원	2021.09.01. ~ 2026.08.31.	사단법인 희망동지 나옷 (임길호 대표)	30명	센터장 포함 3명

□ 민간위탁의 적정성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1)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2)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본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제7조3)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재위탁은 수탁체의 계약 해지요청에 따른 수탁자를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신규 수탁체 선정 시 수탁자의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 신중한 검토와 위탁기준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탁체를 선정하고, 고용승계 등 철저한 인수인계로 돌봄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됨.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